

선거시행세칙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시행 세칙]

2023.09.03. 제 정

전문		
제 1 장	총칙	1~5
제 2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6~7
제 3 장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	8~9
제 4 장	선거공고와 입후보 등록	10~16
제 5 장	선거 운동	17~18
제 6 장	유세 및 선전	17~18
제 7 장	투표	17~18
제 8 장	개표	17~18
제 9 장	당선공고와 이의제기	17~18
제 10 장	선거 부정	17~18
제 11 장	당선무효	17~18
제 12 장	재선거	17~18
제 13 장	투표의 종료	17~18
제 14 장	징계	17~18
제 15 장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	17~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칙]에 따라 신한대학교 학생자치단체 선거가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세칙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장단 선거

제3조(선거시행원칙)

1. 소프트웨어융합학과 본회 모든 회원은 함께 만들어가는 학내사회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
2. 선거는 보통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및 평등선거의 원칙을 따른다.
3. 선거에 쓰이는 비용은 절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모두가 평등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선거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선거의 시기)

1. 선거는 통상적으로 매년 11월에 시행하며, 의정부캠퍼스 교내에서 진행한다.
2. 11월 선거 이후 불출마로 인한 선거 불발 시 차년도에 보궐선거가 가능하다.

제5조(온라인 선거)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온라인 선거가 가능하다.

1. 집단으로 모일 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위험이 있을 때
2. 집단집합 금지에 대한 정부 지침이 시행될 때
3. 비대면 수업(온라인 수업)이 시행될 때
4.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합당하다고 생각될 때

제6조(선거준비기간)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은 선거 공고일로부터 연서의 마감일까지로 하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선거공고
2. 연서기간

제7조(선거기간)

1. 선거기간은 입후보 등록마감일부터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 해산일까지로 하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유세기간
 2. 투표기간
 3. 당선공고
 4.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2. 본회는 입후보 등록마감일의 7일 전까지 상세한 선거기간을 결정한다.

제8조(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경우 본 세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정책이나 후보자의 의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사회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세칙 외 판단)

1. 본 세칙에서 다루지 않는 사안에 대한 판단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2. 본회의 위원은 제1항의 결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0조(선거권과 선거인)

- 1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선거인이라 한다.
- 2 본회 모든 정회원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장단 선거권을 갖는다.
- 3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칙 제26조 제2항에 의거하여 특수한 사정 및 교환학생의 경우, 성립 여부 판단 시 정회원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4 선거인 명부의 확인은 투표개시 36시간 이내 본교 학사팀을 통해 확인되는 등록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11조(피선거권과 피선거인) 후보자 등록기간 중 선거권을 가진 회원에게는 피선거권이 주어지며, 피선거권이 주어진 사람을 피선거인이라 한다. 단,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장은 4학기 이상 및 이수 예정자, 직전학기 평균학점 3.0 이상자, 부학생회장은 2학기 이상 및 이수 예정자, 직전학기 평균학점 2.5 이상자의 회원에게만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제3장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

제12조(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학생회칙]과 본 세칙에 따라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자격과 권한을 위임한 기구이다.

제13조(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1 소프트웨어융합학과운영위원회는 입후보 등록마감일 7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여 공고한다.
- 2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단위에서 파견한 위원들로 구성하며, 각 단위는 최소 2인 이상을 파견해야 한다. 학생회장단은 전원 파견됨을 원칙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장단
 2.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집행위원회
 3.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년대표
- 3 각 학생회장단, 집행위원회, 학년대표는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4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거의 제반업무를 집행하는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집행부를 둘 수 있다.

제14조(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구성 이후부터 해당 선거의 종료일까지 한다.

제15조(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장)

- 1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선출한다.
- 2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의의 소집권한을 가지며 회의를 주재한다.
- 3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장의 궐위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4시간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제1항에 의거하여 선출한다.

제16조(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의 의무)

- 1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은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은 본회에 치러지는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다.
- 4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원인 학생회비의 사용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며, 이에 대한 모든 결산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의 역할)

- 1 선거의 진행을 총괄한다.
- 2 선거인들에게 각종 선거와 관련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 3 선거에 필요한 물품과 자료집을 제작하고 부착·배부하여야 한다.
- 4 선거운동본부의 합동유세와 정책토론회, 공청회를 기획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 5 투표와 개표 관련 실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 6 특정 선거운동본부 및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선거 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
- 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선거운동본부 및 후보자의 자격박탈
 2. 재선거
 3. 선거일정의 조정
 4. 당선무효
 5.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중요한 사항

제18조(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의 피선거권)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제19조(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의 권한)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선거 문화를 위하여 각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조치할 권한이 있다. 단, 경고 조치는 선거관리위원의 2/3이상의 인정 하에 부여된다.

제20조(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

- 1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2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가 불가능하다.

제21조(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 1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선거의 진행과 후보자의 이의제기 및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2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본 세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거와 관련한 사항의 수치, 수량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3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4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5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회의간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 집행부)

1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 집행부는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를 도와 선거의 제반업무를 집행한다.

2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 집행부는 제16조에 해당하는 의무를 갖는다.

3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 집행부는 제17조 제2항, 제3항, 제4항에 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4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 집행부는 제17조 제5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1. 봉인이 되지 않은 투표함에 접촉하는 행위
2. 투표용지에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을 찍는 행위
3. 선거인 명부를 관리하는 행위

제24조(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정부캠퍼스에 사무실을 둔다.

제25조(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의 해임)

1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임한다.

1.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을 시
2. 직무 수행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을 위반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시
3.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본부에 가입할 시
4. 본회 회원이 아닐 시

2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요구서는 해임 요구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여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 각 선거운동 본부장에 한정한다.

4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 요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의결한다.

5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은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 때 해임 요구의 대상이 된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6 해임요구서 양식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것으로 한다.

제26조(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의 추가임명)

1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사임할 수 없다.

2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의 사임요구서는 사임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여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임요구서의 수리 여부는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이 사임할 때 또는 해임될 때 제13조의 어긋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의 임명은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4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의 사임·해임 또는 추가임명으로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공고와 입후보 등록

제27조(선거인 명부)

- 1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개시 36시간 이내로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 2 선거인 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 성별, 소속, 학번 교환학생 여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3 선거공고 후 휴학, 자퇴 그 밖에 선거인의 신상이 변동되는 경우 이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28조(선거공고)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입후보 등록마감일 7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운동본부 명칭)

- 1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운동본부의 명칭은 수식기호는 허용하되, 특수문자 사용은 금지한다.
- 2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운동본부의 명칭은 특정 기구를 비방하는 문구사용은 금지한다.
- 3 각 선거운동본부의 명칭의 중복을 금지한다.

제30조(입후보 등록)

1 피선거권을 가진 회원 중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등록의 마감시한까지 공고한 양식에 맞추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단, 제5호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약은 제6호에 사용할 수 없다.

1. 정·부후보 입후보 등록원서 각 1매
2. 정·부후보 재학증명서 각 1매
3. 정·부후보 성적증명서 각 1매
4. 성명·학번을 포함한 선거운동본부원 명부
5. 자유양식의 선거 공약 요약 포스터 1매
6. PDF형식의 정책자료집 파일
7. 후보자 서약서

3 출마형태는 '정후보 1인과 부후보 1인'의 형태로 한다.

4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후보자 등록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하려는 단체의 자격을 심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공고일 자정까지 등록된 후보자의 성명과 소속, 선거운동본부명을 확정공고 하여야 한다.
2. 등록일 18시 30분 이후에는 등록을 금한다.
3.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가 과실로 미비한 서류를 접수하였을 경우 선거운동본부에 당일 21시까지 통보하고 다음날 18시까지 서류를 접수한다.

제31조(등록무효)

- 1 입후보 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선거운동본부,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될 때
 2.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발견될 때
 3.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한 것이 발견될 때
- 2 입후보 등록이 무효처리 된 경우,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해당 선거운동본부, 후보자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제5장 선거운동

제32조(선거운동의 정의)

- 1 선거운동은 선거에 임하여 특정 선거운동본부를 당선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단,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2 본회 회원은 선거운동본부에 참여하여 선거운동본부원으로서 이 세칙에서 제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33조(선거운동의 구성)

- 1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장단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1. 선거운동본부, 후보자의 개인유세
 2. 선거운동본부, 후보자의 강의실유세
 3. 선거운동본부, 후보자의 합동유세
 4. 선거운동본부, 후보자의 정책토론회
 5. 선거운동본부, 후보자의 정책 및 공약 선전
 6. 선거운동본부, 후보자의 공청회
 7. 선거운동본부, 후보자의 온라인 선거운동
- 2 그 밖에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유세 형태

제34조(선거운동의 기간과 공간)

- 1 선거운동의 기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별하며, 입후보 확정공고일 이후부터 각 호에 명시되어 있는 일시로 한다.
 1. 온라인: 입후보 확정공고일부터 투표일 전일
 2. 오프라인: 입후보 확정공고일부터 투표일 전주 평일

2 선거운동의 시간에 대한 제한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한다.

3 선거운동은 의정부캠퍼스 학내에서만 가능하다.

4 선거운동본부가 선거운동의 기간 또는 공간을 어길 경우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안의 의도성을 판단하고, 경고 조치할 수 있다.

제35조(선거운동본부원)

1 선거운동본부원은 선거운동본부에 소속한 사람으로서 세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2 선거운동본부원은 본회 회원에 속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본회 준회원이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각 선거운동본부는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휴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선거운동본부원 등록기간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6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
2. 학생임원장학 수혜자
3. 학과운영위원회
4. 선거운동을 대가로 부정청탁을 받은 자

2 선거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준회원은 예외로 한다.

제37조(선거운동을 위한 직무정지)

1 제36조 제1항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위의 직무를 정지하여야 한다.

2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의 마감일 7일 전까지 직무정지에 관한 서류양식을 공고하여야 한다.

3 당사자는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직무정지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직무정지에 관한 서류 수령 후 24시간 이내에 당사자에게 수리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양식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서류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5 직무를 정지한 사람은 절차를 준수하여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6 직무정지에 관한 서류 수리기간과 선거운동본부원 등록기간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8조(학생회 및 언론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사람은 특정 후보자나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지지나 비방을 할 수 없다.

1.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
2. 학생임원장학 수혜자
3. 학과운영위원회
4. 선거운동을 대가로 부정청탁을 받은 자

2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사람의 선거 운동을 발견할 시,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이의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단,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단체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학과운영위원회에 해당단체의 선거 공정성 훼손에 관한 안건을 회부한다.

4 학과운영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심의하여 해당 단체에 경고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9조(그 밖의 사항) 이외 선거운동과 관련한 사항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6장 유세 및 선전

제40조(유세) 유세는 개인유세, 강의실유세, 합동유세로 이루어지며 입후보 확정공고일 06시부터 투표 전날 18시까지 할 수 있다. 단,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방법이 제한될 수 있다.

제41조(유세선전물)

1 유세선전물은 포스터, 플래카드, 리플렛, 입간판으로 한정한다.

2 유세선전물에 대한 규격과 부착 및 설치 장소 등은 [선거시행세칙] 제18장을 따르며, 각 선거운동본부는 이에 따른 유세선전물을 제작하여야 한다.

3 기타 선전물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른다.

제42조(정책자료집)

1 각 선거운동본부별 정책자료집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마감시한까지 제출한다.

2 각 선거운동본부는 정책자료집에 명시한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정책만을 정책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단, 표현의 미세한 차이는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따른다.

3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자료집을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지정한 장소에 정해진 부수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43조(온라인 선거유세) 인터넷과 휴대폰 그 밖의 온라인을 통한 선거유세의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각 선거운동본부는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선거유세를 할 수 있다.

2 온라인 사이트의 내용은 본회 회원의 의견개진과 후보자의 정보, 정책 자료집, 선거운동본부의 의견 및 홍보 등으로 구성한다.

3 기타 사항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4조(언론을 통한 선거유세) 언론을 통한 선거유세는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5조(합동유세, 정책토론회 및 공청회)

1 합동유세, 정책토론회 및 공청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되며, 세부적인 일정과 장소는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급작스러운 우천 시 또는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일정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1. 의정부캠퍼스 1차 합동유세
 2. 의정부캠퍼스 정책토론회 및 공청회
- 2 단일후보일 경우, 제2항 중 공청회만 진행한다.
- 3 합동유세 순서는 입후보 등록 이후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추천하여 결정한다.
- 4 각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들은 유세시간 중 발언을 할 수 있다. 단, 합동유세의 시작 10분전까지 후보자가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후보자가 발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5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후보자의 수를 고려하여 합동유세의 시간을 결정한다. 단, 한 선거운동본부의 유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 6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별 유세시간이 25분을 초과할 시 경고 조치할 수 있다. 이후 5분을 초과할 때마다 추가로 경고 조치할 수 있다.
- 7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토론회 및 공청회의 실시를 결정한다.
- 8 각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는 합동유세나 정책토론회, 공청회간 타 후보에 대한 인격적인 비방이나 근거 없는 비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9 후보자의 판단에 따라 제1항의 유세 및 선거일정을 포기할 수 있다.
- 제46조(합동유세 중 유세 금지) 합동유세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유세장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의 선거유세를 전면 금한다.
- 제47조(허위사실 유포와 기재에 대한 제재조치)
- 1 선거운동본부가 선전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거운동본부는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일시까지 문제가 된 부분을 전량 교체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 2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원이 강의실유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는 다음 날 08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진행되는 강의실 유세에서 정정발언·사과발언을 하여야 한다.
 - 3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 기재와 유포, 사후 대응에 대해 경고 조치할 수 있다.

제7장 투표

제48조(투표절차)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의 상세한 절차를 투표시행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투표구의 지정)

- 1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절차의 상세한 안내를 위해 투표구를 지정한다.
- 2 투표구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의정부캠퍼스 투표구
 2.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구의 구분을 확정하고 투표

시행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한다.

제50조(투표기간)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2일 이상을 투표기간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51조(투표기간의 연장)

- 1 전체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았을 경우 연장투표를 실시한다.
- 2 투표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투표율이 정회원의 과반수를 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표 기간을 공휴일 제외 최장 2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제52조(투표시간)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기간에 한하여 투표시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53조(투표소의 설치)

- 1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정한 투표구에 투표소를 한 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2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의 설치 장소를 확정하고 투표시행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3 투표소의 입구와 출구는 투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 단,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입이 가능하다.
 1. 해당 투표소의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
 2. 장애학생과 동행한 도우미
- 4 각 투표소에는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 1인 이상이 상주하여야 한다.

제54조(투표소의 운영시간)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운영시간을 결정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투표소의 선전물) 투표소에는 투표 절차와 유의사항,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한 포스터만을 부착할 수 있다.

제56조(투표자의 확인)

- 1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자의 확인 방식을 투표의 절차와 함께 투표 시행일 7일 전에 공고한다.
- 2 특정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본부원 또는 선거운동본부원에 요청에 의하여 타인이 이중 투표나 대리투표를 할 경우,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본회 회원에게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조치하거나 후보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57조(투표함)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 각 선거별 투표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8조(투표함의 봉인과 보관)

- 1 투표시간 종료 후,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을 봉인하여야 한다.
- 2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봉인한 중앙투표소의 투표함을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옮긴다. 단, 개표일에 한하여 각 선거의 개표장으로 옮긴다.
- 3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함의 열쇠와 미사용 투표용지를 별도로 수거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4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을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옮긴 후부터 투표소로 옮기기 전까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의 관리하에 보관하여야한다.

제59조(후보자의 투표소 접근 제한) 후보자는 투표를 제외한 경우 투표소에 접근 할 수 없다. 제기할 수 없다.

제8장 개표

제60조(개표시작과 순서)

1 투표가 종료되면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과 각 선거운동본부장의 입회 하에 선거인명부를 통해 투표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한다. 단, 비밀투표에 저촉되는 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개표를 시작한다.

1. 투표자수가 유권자수의 과반에 달함
2. 모든 투표함의 도착
3.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장 및 3분의 2 이상의 선거관리위원 참석
4. 투표함 봉인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제61조(무효투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해당 투표구의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해당 투표구의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장의 도장이 없는 것

2 이 외의 사항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제62조(유효투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유효로 한다.

1. 어느 란에 기표한 지 투표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는 것
2. 한 후보의 란에 두 개 이상 기표하거나 겹치게 기표한 것
3. 기표 도장이 기표란 내에 90%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이 외의 사항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제63조(기권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기권표로 하며 유효로 한다.

1.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아니한 것
2. 두 군데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
3. 어느 란에 기표한 지 투표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것

2 이 외의 사항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제64조(개표일과 개표장소)

1 개표일은 투표종료 당일 개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그날 개표가 불가능할 경우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단,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를 24시간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2 개표 장소는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5조(재투표)

1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투표를 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라 판단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재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제9장 당선공고와 이의제기

제66조(당선공고)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종료 후 24시간 이내로 당선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67조(이의제기)

- 1 각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장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 종료 후 48시간 이내로 당선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 2 각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장이 이의제기를 할 경우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각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장이 제2항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조치할 수 있다.
- 4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제기된 이의를 책임 있게 논의하여야 한다.

제10장 선거 부정

제68조(선거 부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 부정이라 한다.

- 1 누군가 투표 방해와 대리 투표 그 밖의 투표의 과정에 개입하여 조작한 경우
- 2 누군가 개표의 결과를 조작한 경우
- 3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유권자에게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금품을 제공한 경우
- 4 그 밖의 위에 준하는 중대한 부정이 발견된 경우

제69조(선거 부정의 판단)

- 1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제기 기간 중 선거 부정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 2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제68조 제2항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선거 부정에 관한 안건에 대해 논의하여야 한다.
- 3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부정을 결정하기 이전에 의심되는 사건의 경위를 명백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 4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부정에 관한 안건을 책임 있게 논의하여야 하며 모든 경과를 본회 회원과 각 선거운동본부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5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부정에 관한 안건을 논의할 시,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본부장을 배석하여 해명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제11장 당선무효

제70조(당선무효)

1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논의 거쳐 선거운동본부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제68조에 따라 선거운동본부의 당선 이후 선거 부정이 발견된 경우
2. 제74조에 따라 선거운동본부의 자격이 박탈된 경우
3. 당선 선거운동본부가 당선을 포기한 경우

2 그 밖의 사항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제71조(당선무효의 공고)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무효의 결정 이후 24시간 이내에 시기와 사유를 분회의 회원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장 재선거

제72조(재선거)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단,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리를 완료한 이후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연장투표 후에도 투표율이 50%를 넘지 아니한 때
2. 선거에 부정이 발견된 때
3. 당선된 선거운동본부의 당선이 무효로 된 때

2 재선거가 결정될 시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로 재선거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여야 한다.

제13장 투표의 종료

제73조(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1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제반업무를 마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산한다.

1. 선거운동본부의 당선을 확정하여 공고하는 경우
2. 당선한 선거운동본부가 없음을 공고하는 경우

2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으로 선거는 종료된다.

제14장 징계

제74조(선거운동본부·후보자의 자격박탈)

1 학과운영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선거운동본부·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선거운동본부가 4회의 경고 조치 받은 경우

2. 선거운동본부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에 의도적으로 불응하거나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아니할 경우

제75조(제재조치)

- 1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 본 세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선거에 위대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 2 선거운동본부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동시다발적이거나 연속적으로 저지른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건의 발생으로부터 24시간 이후에 접수한 사안은 무효로 한다.
 2.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초로 접수한 A사안에 대해 접수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또는 제재를 조치하기 전까지 추가로 접수한 동일한 사안 A사안과 하나의 사안으로 한다.
 3.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가 A사안에 대해 조치한 이후 발생한 동일한 사안을 접수할 경우 이는 A사안과 별개의 사안으로 한다.
- 3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가 4회 경고 조치 받은 경우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한다.
- 4 경고 조치 받은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는 이후 진행하는 유세에서 경고 사유에 대한 발언 및 사과발언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제15장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

제76조(회계기간) 선거의 회계기간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일로부터 선거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77조(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원) 제16조 제4항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원은 학과학생회비로 운용한다.

제78조(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

- 1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공고로부터 입후보 등록마감일 3일 이전까지 학과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학과운영위원회는 선거의 예산을 심의·의결한다.
- 3 예산의 편성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을 수정할 경우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학과운영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이를 결산에 반영하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79조(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산)

- 1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종료일 이후 7일 이내에 결산을 본회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2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종료일 이후 7일 이내에 각 항목

별로 결산내역의 증빙자료를 정리하여 학과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0조(세칙의 제·개정)

1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운영위원회는 본 세칙 제·개정하여 학생총회에 보고 및 본회 회원에게 공개하여야한다.

2 본 세칙 내 기재되지 않은 사항 및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발생할 시,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항을 학과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판단은 개정 이전까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따른다.

3 본 세칙의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장의 협의 하에 해석을 확정한다.